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9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재정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4. 7. 16.
3. 회 부 일: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범죄 발생 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3배 높고 지속기간은 2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강서구 등촌역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은 물론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 없는 통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된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아직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가정 내 스

토키ng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키ng 행위를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파. (생략) 4. ~ 8.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 하. (현행 파목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에 따른 상해·폭행·유기·학대·협박·강간·추행 등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¹⁾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제3호타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²⁾ 제외하고는 스토킹
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포함시켜 가정 내 스톱킹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가족 간 스톱킹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톱킹은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정구성원 간의 스톱킹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여 가정 내 스톱킹도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 개정안과 같이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를 추가하게 되면 가족 간 스톱킹범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고의무(제4조), 응급조치(제5조), 고소에 관한 특례(제6조), 임시조치(제8조), 피해자보호명령(제3장) 등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⁴⁾ 이에 따라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조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⁵⁾ 스톱킹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스톱킹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스톱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3) 허민숙, 「가족 관계 등에서의 스톱킹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톱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

- 이혼 과정에서 스톱킹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34.2%에 해당하고, 2018년 강서구 등촌동 전치 살인사건[이혼한 이후에도 전치의 차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추적하고 결국 살해한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 심지어 결별 이후에도 스톱킹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음.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반의사불벌의 적용,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정회복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유사한 피해자 보호 제도(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①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는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한 점⁶⁾, ② 스토킹처벌법이 가정폭력처벌법보다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의 위반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⁷⁾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

등을 고려할 때 가정구성원 간의 스토킹범죄를 그 밖의 스토킹범죄와 구분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으로,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는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한 조치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가정구성원 간의 스토킹행위가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 적용 법률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상으로는 가정구성원 간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신설되었고⁸⁾,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삭제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두 법률이 처벌 또는 방치하고자 하는 행위의 태양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스토킹처벌법 역시

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 수장명령 등 병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두 법의 각종 피해자 보호조치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점 등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찰청**은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조치와 유사한 피해자 보호제도(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킬 경우 보호조치 과정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는 범죄에 이르기 전인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스토킹처벌법이 가정폭력처벌법보다 잠정조치 등의 위반에 대한 무거운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